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(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(2단계)건설공사 1공구)

- 점검일시 : 2022.01.20 (목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, 박찬표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하수BOX 암거 이설공사 현장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설치된 작업발판이 통로와 이격되어 근로자 통행 시 띠장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통행로 확보바람.(1)
 - 하수BOX 암거 철근 작업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는 안전난간 사이로 통행하도록 만들었으며, 고정용 로프가 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 있으니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하기 바람.(1-1)
 - 강설로 미끄럽고, 가설전선이 놓여 있는 강관 비계 상부에 근로자가 통행하여 전도 및 감전사고 우려 있으니, 통행 필요시에는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바람.(1-2)
 - 하수BOX 암거 주변 보행자 통행로는 기존 보도와 단차가 있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있으니 평탄하고 안전하게 보완바람. (1-3)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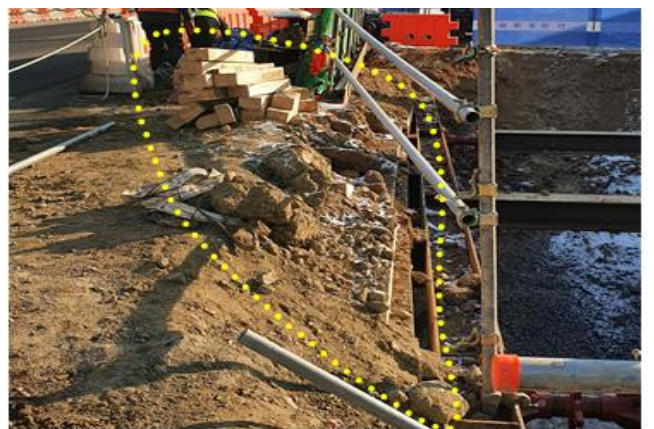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인천방향 AGS 차수 그라우팅 작업장 굴착구간 작업자 이동시 전도되지 않도록 작업발판 등 안전한 가설통로 설치 요망(2)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여의도 방향 터파기 구간 배면에 자재나 토석이 낙하하지 않도록 제거, 정리, 낙하물방지망 등으로 조치 요망(3)
- 여의도 방향 되메우기 구간 낙하물방지망 정비 요망(3-1)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흠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여의도 방향 흠막이가시설 수로암거 파일 향타 시 근입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입개소 몇 개 당 1개씩을 정하여 심도표식 요망(4)
 - 여의도 방향 흠막이가시설 수로암거 파일 향타 시 흠 채움 시공 철저히 관리 요망(4-1)
 - 여의도 방향 흠막이가시설 수로암거 파일 향타 시 엄지말뚝 수직도 관리 철저히 요망(4-2)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건설기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여의도 방향 흠막이가시설 수로암거 파일 향타 시 오거 천공기 아웃트리거가 줄파기 위치나 인근에 위치하므로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 되메우기 시 다짐관리 철저히 요망 요망(5)
-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2.2 건설기계 안전-003(카고크레인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인천방향 차도에 근접하여 야적한 각종 목재는 건기에 담배꽂초 등이 투척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타지 않는 재질로 도포하여 관리요망(6)

- 인천방향 차수 그라우팅 컨트롤 컨테이너 박스 내부에 전기와 난방기를 사용 중으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출입구 인근에 소화기 비치요망(6-1)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, 제245조(화기 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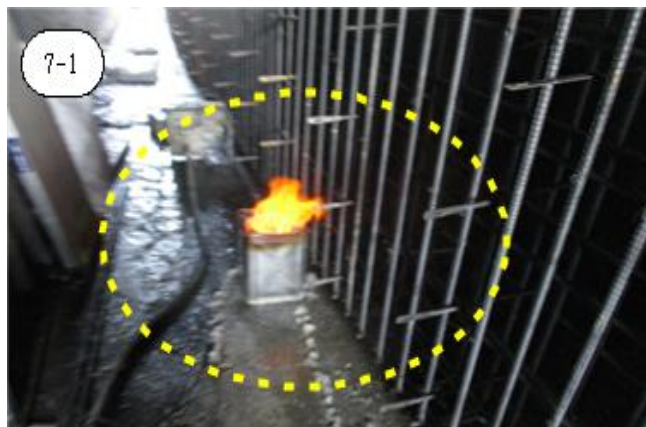
- 하수BOX 암거 콘크리트 양생구간에 보온양생을 위해 설치된 고체연료로 인한 화재 등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근에 소화기 설치 등 조치바람.(7)

- 하수BOX 암거 철근작업구간에 점화된 고체연료가 방치되어 있으니, 소화기 설치 및 근로자 교육 등 안전관리 바람.(7-1)

- 하수BOX 암거 상부 통행로에 고체연료가 일반 자재와 같이 보관되어 있으니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위험물 저장소에 별도보관 후 소화기 비치바람.(7-2)

- 하수BOX 암거 상부 고압가스 저장을 위한 위험물 저장소 앞에 재떨이가 설치되어 안전사고 우려 있으니 흡연실은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고, 소화기 비치 등 조치 바람. (7-3)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/위험 방지 업무 등)





○ [모범사례]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흙막이가시설 버팀보를 해체하고 PC박스 시공 후 되메우기 전까지 배면지반 변형을 억제하기 위해 구조물과 흙막이가시설 벽체에 버팀목을 설치한 모범사례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